

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(안병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7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4. 1. .
발 의 자 : 안병배 의원

(찬성자 8 인)

□ 제안이유

- 한국전쟁 중 인천광역시 월미도 내 월미산 일대는 인민군의 지하 요새가 있던 곳으로 인천상륙작전 중 폭격 등으로 지역주민의 전 재산이 소실되었고, 많은 주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였음. 또한 인천상륙작전 후 軍(미군·한국해군)의 주둔 및 인천광역시의 공원지정 등으로 주민들이 살던 거주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원 및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- 따라서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하여 거주지를 잃은 사람에게 이주 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, 폭격에 의하여 부상당한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월미도사건의 피해주민 및 그 유족의 심사·결정·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피해주민지원 심의위원회를 둠(안 제4조)

나. 피해주민 중 거주지를 잃은 사람 또는 유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함 (안 제6조)

다. 피해주민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(안 제7조)

라. 거짓,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정착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와 잘못 지급된 경우에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함(안 제 10조)

□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 발취사항 : 민사소송법 제194조, 제195조, 제196조

○ 시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

- 이주정착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·범위·방법·지급액 등을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(안 제4조), 현시점에서 추정하기는 어려워 비용추계서는 제외함.

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의 피해주민과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월미도사건”이란 한국전쟁 중 인천상륙작전 후 군의 주둔과 폭격 등으로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월미도 내 월미산 지역 일대 거주 원주민들이 아무런 지원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거주지를 잃은 사건을 말한다.
2. “피해주민”이란 월미도사건과 관련하여 거주지를 잃은 사람 또는 군의 폭격 등으로 사망(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·행방불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피해주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유족”이란 피해주민의 배우자 및 자녀, 부모, 손자녀 중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제4조(지원심의위원회 설치) ① 인천광역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피해 주민 및 유족의 심사·결정·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피해주민 또는 유족자격의 심사·결정
2. 제6조에 따른 이주정착금 및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금(이하"지원금 등"이라 한다)의 지급대상 및 범위
3. 지원금 등 지급액 및 지급방법
4.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의 적격성 결정
5. 그 밖에 시장이 피해주민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5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시 의원
3. 시 관계공무원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공무원인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

지급할 수 있다.

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이주정착금) 시장은 피해주민 또는 유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.

제7조(의료지원금) 시장은 피해주민으로 생존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제8조(결정통지) 시장은 지원금 등의 지급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해야 한다. 다만,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법적 절차에 따른다.

제9조(지급청구)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금 등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. 다만, 해외거주자, 출국자, 재소자 등 부득이 이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제10조(환수) ① 시장은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.

1. 거짓,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
2. 잘못 지급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되돌려 받고, 되돌려 주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사항

<p>관계법령</p>	<p>○ 민사소송법</p> <p>제194조(공시송달의 요건)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</p> <p>제195조(공시송달의 방법)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계시판에 게시하거나,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96조(공시송달의 효력발생)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. 다만,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.</p> <p>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.</p>
<p>관련법규 정비대상</p>	
<p>관련자료</p>	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요인

- 생활안정 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·범위·방법·지급액 등을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(안 제4조), 현시점에서 추정하기는 어려워 비용추계서는 제외함.

2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의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 성 자

- 문화복지위원회 안병배의원